

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4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년 12월 일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☐ 제안이유

- 대통령께서 물소비 억제를 위해 수도물값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'99. 4. 7일 국정개혁 보고시 지시
- 물관리 종합대책에서 상수도요금 현실화 목표를 설정하여 지방상수도요금을 2001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 지시
- '9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세입세출 결산결과 48%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나 물가에 파급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5.6%를 2001년 3월 고지분부터 인상하려는 것임

☐ 주요골자

- 조례 별표2의 업종별요금표를 인상조정

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

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- ②(일반적 적용례) 이 조례는 2001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부과·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

소관 실·과·소		상하수도과 ☎ 940-4801
입안자	상하수도과장	강경배
	수도행정담당	박찬규
	담당자	윤태돈

[별표2]

업종별요금표

(단위 : 원/톤)

업종별	사용량	톤당요금	비고
가정용	0~10	300	
	11~20	350	
	21~30	420	
	31~40	530	
	41~50	630	
	51이상	700	
업무용	0~20	650	
	21~50	700	
	51~100	810	
	101~300	850	
	301이상	900	
영업용	0~30	700	
	31~50	750	
	51~100	830	
	101이상	1,000	
옥탕1종	0~200	430	
	201~300	500	
	301~500	570	
	501이상	660	
옥탕2종	0~200	1,000	
	201~500	1,100	
	501~1,000	1,300	
	1,001이상	2,000	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				
제28조(요금) ①요금은 별표2의 업종별 요금표의 요금과 별표 4의 구경별 정액요금표의 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【별표2】 업종별 요금표 <table><tr><th colspan="4">현행</th></tr><tr><th>업종별</th><th>사용량</th><th>톤당요금</th><th>비고</th></tr><tr><td></td><td>별첨</td><td></td><td></td></tr></table>	현행				업종별	사용량	톤당요금	비고		별첨			제28조(요금) ①(현행과 같음) 【별표2】 업종별 요금표 <table><tr><th colspan="4">개정안</th></tr><tr><th>업종별</th><th>사용량</th><th>톤당요금</th><th>비고</th></tr><tr><td></td><td>별첨</td><td></td><td></td></tr></table>	개정안				업종별	사용량	톤당요금	비고		별첨		
현행																									
업종별	사용량	톤당요금	비고																						
	별첨																								
개정안																									
업종별	사용량	톤당요금	비고																						
	별첨																								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		개정안		
업종별 요율표			업종별 요율표		
【별표2】 (단위 : 톤/원)			【별표2】 (단위 : 톤/원)		
업종별	사용량	톤당요금	업종별	사용량	톤당요금
가정용	0~10	240	가정용	0~10	300
	11~20	280		11~20	350
	21~30	370		21~30	420
	31~40	440		31~40	530
	41~50	530		41~50	630
	51이상	680		51이상	700
업무용	0~20	540	업무용	0~20	650
	21~50	560		21~50	700
	51~100	580		51~100	810
	101~300	620		101~300	850
	301이상	700		301이상	900
영업용	0~30	600	영업용	0~30	700
	31~50	640		31~50	750
	51~100	670		51~100	830
	101이상	740		101이상	1,000
육탕1종	0~200	360	육탕1종	0~200	430
	201~300	420		201~300	500
	301~500	480		301~500	570
	501이상	550		501이상	660
육탕2종	0~200	660	육탕2종	0~200	1,000
	201~500	720		201~500	1,100
	501~1,000	1,200		501~1,000	1,300
	1,001이상	1,800		1,001이상	2,000